

◎ 환경부공고제2002-45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 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징수교부비용의 현실화와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른 차령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중수도·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인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에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을 추가함.
- 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전시용 자동차에 대해 전시기간중 개선부담금 전액을 경감토록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함.
- 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설치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수질오염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함.
-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부담금 징수교부비용을 현실화하고(2003년 15%, 2004년 20%), 징수시설적에 따

른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징수율 향상을 도모함.

- 마.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료 [별표1]의 개정사항을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에 반영하고, 짐질방에 대한 적용기준을 특수목욕장으로 새로 정함.
- 바. 시청소재지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시는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토록 함.
- 사.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부 여객자동차의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에 등록된 여객자동차의 지역계수를 시지역계수로 적용토록 함.
- 아. 자동차의 정기검사시기 연장 및 자동차배출가스 중간 검사제 도입등에 따른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른 차령계수의 단계를 줄이고 차등폭을 조정함.

3. 기타문의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에 문의(전화 : 02-2110-6677, 팩스 : 02-504-4439)

◎ 환경부공고제2002-46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1999. 12. 31.)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1999. 11. 27.)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1999. 12. 31.)에 따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 나.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보관하거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해서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7조의 개정(1999. 11. 27)에 따라 평균오염유발계수를 삭제함.

3. 기타문의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에 문의(전화 : 02-2110-6677, 8 팩스 : 02-504-4439)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2002-3호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관한고시(국립환경연구원 제 2001-22호, 2001. 11. 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7.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 측정

기, 나. 기능및 구성 (3)항, 다. 성은 (5)항, (6)항, (8)항, (9)항, 라. 종합성능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기능 및 구성

(3)채취부 선단은 배기관 부압을 1kpa이상 상승 시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배기관 벽면으로부터 5mm 또는 프로브내경의 10%이상중 큰쪽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성능

(5) 측정기의 물리적인 응답시간은 0.4초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적인 응답시간은 베셀필터 응답시간을 포함하여 1.3초 이내 이어야 한다.

(6)빛에 의한 반응시험시 측정치 변동율이 1% 이내 이어야 한다.

(8)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

엔진회전속도는 10rpm단위로 8,000rpm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최대눈금치의 ±1%이내 이어야 한다.

(9) 1초에 10회 이상의 매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시 값은 1초에 1회이상 지시하여야 한다.

라. 종합성능

430mm유효광로길이를 갖는 기준장비와 비교시 험한 오차는 최대눈금치의 ±3%이하 이어야 하며, 광흡수계수 k 의 허용오차는 최대눈금치의 ±4%이하 이어야 한다.

[별표2]의 1.7.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다. 영점편차, 바. 응답시간, 파. 종합성능을 다음과 같이한다.

다. 영점편차 : 제로가스를 흘러주면서 영점조절을 한 후 최소1시간 후 측정치를 구한다. 이 값과 최고측정치와의 편차를 구하여 영점편자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text{영점편차}(\%) = \frac{|d|}{\text{최대눈금치}} \times 100$$

d : 최종측정장치-최소측정장치

바. 응답시간

정상가동조건에서 80%부근의 교정용필터를 넣고 지시치가 교정용필터값의 10%에서 90%까지 지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파. 종합성능

(1)기준기기와의 비교시험은 시험용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기준기기와 피시험기기로 동시에 최소 10회이상 측정하여 각각의 측정평균치와의 차를 다음식에 의하여 측정오차를 구한다.

$$\text{측정오차}(\%) = \frac{|d|}{\text{최대는금치}} \times 100$$

d : (피시험기기측정치-기준기기측정치)의 평균

(2) 광합수계수 k는 교정용 매연표준필터를 사용하여 얻어진 피시험용 기기의 지시치(광흡수계수)를 다음 표1과 비교하여 오차를 구한다.

[표1] 광흡수계수(k)

%	k(m ⁻¹)						
1	0.02	26	0.70	51	1.66	76	3.32
2	0.05	27	0.73	52	1.71	77	3.42
3	0.07	28	0.76	53	1.76	78	3.52
4	0.09	29	0.80	54	1.81	79	3.63
5	0.12	30	0.83	55	1.86	80	3.74
6	0.14	31	0.86	56	1.91	81	3.86
7	0.17	32	0.90	57	1.96	82	3.99
8	0.19	33	0.93	58	2.02	83	4.12
9	0.22	34	0.97	59	2.07	84	4.26
10	0.25	35	1.00	60	2.13	85	4.41
11	0.27	36	1.04	61	2.19	86	4.57
12	0.30	37	1.07	62	2.26	87	4.76
13	0.32	38	1.11	63	2.31	88	4.93
14	0.35	39	1.15	64	2.38	89	5.13
15	0.38	40	1.19	65	2.44	90	5.36
16	0.41	41	1.23	66	2.51	91	5.60
17	0.43	42	1.27	67	2.58	92	5.87
18	0.46	43	1.31	68	2.65	93	6.19
19	0.49	44	1.35	69	2.72	94	6.54
20	0.52	45	1.39	70	2.80	95	6.97
21	0.55	46	1.43	71	2.88	96	7.49
22	0.58	47	1.48	72	2.96	97	8.16
23	0.61	48	1.52	73	3.05	98	9.10
24	0.64	49	1.57	74	3.13	99	10.71
25	0.67	50	1.61	75	3.22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2-4호 ◎

유독물 · 관찰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9.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관찰물질지정 별표1의 2001-1-525란 다음에 2002-1-526내지 2002-1-52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그림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2002-1-526	2,2'-티오디에탄티올 [2,2'-Thiodiethanethiol; 3570-5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 삼키면 유독함.	· 가스/연기/증기/분무 등을 호흡하지 말 것. ·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02-1-527	1-사이클로헥실-1H-파롤-2,5-디온[1-Cyclohexyl-1H-pyrrole-2,5-dione; 1631-2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삼키면 유독함.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연기/증기/분무 등을 호흡하지 말 것. 피부와 눈에 접촉을 피할 것.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2002-1-528	N'-(3-(디메틸아미노)프로필)-N,N-디메틸프로판-1,3-다이민[N-(3-(Dimethyl amino)propyl)-N,N-dimethylpropane-1,3-diamine; 6711-4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와 접촉시 유독함.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 또는 삼키면 유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 및 눈에 접촉을 피할 것.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2002-5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 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화

2002-3-2033	[총칭명] Sodium((chloro-hydroxy-carbomonocyclic)azo-alkyl-carbopohycle) ferrate
2002-3-2034	1,1,1,3,3-Pentafluorobutane [CAS No. 406-58-6]
2002-3-2035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hydroxy-terminated, reaction products with Me hydrogen siloxanes and trimethoxy(3-(oxiranymethoxy)propyl)silane [CAS No. 153890-18-7]
2002-3-2036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hydroxy-terminated, reaction products with Me hydrogen siloxanes [CAS No. 153890-19-8]
2002-3-2037	2-Butyl-isoquinolinium salt with 2,2'-(2,5-cyclohexadiene-1,4-diylidene) bis(propanedinitrile) [CAS No. 84632-22-4]
2002-3-2038	γ,ω -Perfluoroalkyl(C=8-14) 2-propenoate polymer with octadecyl 2-propenoate, N-(butoxymethyl)-2-methyl-2-propenamide, N-(hydroxymethyl)-2-methyl-2-propenamide and oxiranyl methyl 2-methyl-2-propenoate [CAS NO. 부여 안됨]
2002-3-2039	[총칭명] Polyoxyalkylene esters with polyisobutylene derivs. fatty acids and alkan(C=2-5)oI
2002-3-2040	Fatty acids, C18-unsatd.. trimers, mixed esters with 2-ethyl-1-hexanol and polyethylene glycol mono-Me ether [CAS No. 173832-45-6]
2002-3-2041	Cyclohexylbenzene [CAS NO. 827-52-1]
2002-3-2042	[총칭명] Polyoxyalkylene polymer with diisocyanated trimethylhexane
2002-3-2043	[총칭명] Poly(oxyalkylene) polymer with isocyanated cyclohexane
2002-3-2044	[총칭명] Acrylic acid polymer with lactam, alkyl methacrylates, hydroxyethyl methacrylate, alkyl acrylate and substituted alkanol
2002-3-2045	(Z)-N-(2-Aminoethyl)-N'-(2-[2-(8-heptadecenyl)-4,5-dihydro-1H-imidazol-1-yl]ethyl)ethylenediamine [CAS No. 65817-50-7]
2002-3-2046	Lithium nickelate [CAS No. 12031-65-1]
2002-3-2047	Tetrabutylammonium chloride [CAS No. 1112-67-0]
2002-3-2048	Diphenyl phosphinous chloride [CAS No. 1079-66-9]
2002-3-2049	[총칭명] 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alkenedioic acid, (chloroalkyl)alkanyl oxide, dihydro-dioxo-heteromonocyclic carboxylic acid, alkyl aldehyde, heteromonocyclic dione, (alkylidene)bis(carbon

학물질 별표의 2002-3-2032란 다음에 2002-3-2033내지 2002-3-205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2-6호

유독물·관찰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9.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표1의 2001-1-528란 다음에 2002-1-529란을, 별표2의 2001-2-10란 다음에 2002-2-1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002년 3월 29일
국립환경연구원장

(별표1) 유독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02-1-529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니움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삼키면 유해함 ·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과 피부에 접촉을 피할 것 ·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견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 줄 것)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02-2-11	헥사브로모시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25637-99-4, 3194-5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고시의 시행당시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환경부고시 제2002-49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검준시장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중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중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2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수소이온농도, 총질소, 총인, 색도, 노말핵산추출물질(광유류)의 배출허용기준은 원폐수로 한다.

부칙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2002-50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 1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 항목 : 수소이온농도, 색도, 노말핵산추출물질(광유류)

2. 방류수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 : 5.8~8.6

- 색도 : 200도 이하

- 노말핵산추출물질(광유류) : 5mg/l 이하

부칙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02- 52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2001-197호, 2001. 12. 2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2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황함유량 0.5% 또는 0.3% 이하의 중유 공급·사용지역안에서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중 해당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기간동안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에 황함유량 1.0% 이하의 중유

(황합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 · 사용지역의 경우) 또는 황합유량 0.5% 이하의 중유(황합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 · 사용지역의 경우)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6항 본문중 “황합유량 1.0% 이하 중유”를 “황합유량 1.0% 또는 0.5% 이하 중유”로 하고, “황합유량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 ·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대한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한 겸용버너 설치 · 운영자가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사태 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의 봉인해제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되지 아니한 청정연료 공급중단 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2는 (연합회로 문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02-55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홍하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기홍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1. 사업목적

기홍읍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처리하여 신갈저수지의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용인시장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286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홍읍 하갈리 12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84,884m²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칭 : 기홍 하수종말 처리시설
- 시설 용량 : 50,000톤/일
- 처리방법 : B3공법(BioBest Bacillus System)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 2,507.77ha
- 예정처리구역 : 746.6ha

마. 사업시행기간 : 2002년~2004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 “붙임” 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용인시 하수도과(031-329-245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